

영업손실 보상 요구를 기각한 재결례

○ (관련 법리)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, 제1호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(무허가건축물등, 불법형질변경토지,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)에서 인적·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을 말하되,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, 제2호에서는 영업을 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되어 있다.

○ (판단) 관계 자료(소유자 의견서, 사업시행자 의견서, 사업자등록증, 일반건축물대장 등)를 검토한 결과, ○○○은 2019. 4. 00.부터 ○○○도 ○○○시 ○○○구 ○○○동 000 전 0,000㎡상의 축사를 임차하여 제조업인 ○○○○(목재가공)를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된다.

따라서 축사에서의 제조업은 적법한 장소가 아니므로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고,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은 2020. 3. 00.로 무허가건축물 임차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2019. 3. 00.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는 영업이어야 하나, ○○○은 2019. 4. 00.에 개업한 것으로 확인되어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업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여 달라는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